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사항

■ 편의제공 대상

○ 해당 채용전형 응시자 중,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사람으로서, 시각 · 지체 · 뇌병변 · 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해당전형 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

○ 기타 의료 기관장이 인정한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어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람

■ 편의제공 신청방법 및 결과 안내

○ 편의제공 신청서에 장애유형 · 정도, 편의제공 신청 사항 등을 작성 제출

- 입사지원서 제출 시, 신청서, 장애인증명서, 의사진단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
-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 편의제공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, 안내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○ 신청자 대상 승인 여부 별도 안내 (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등 개별 안내)

■ 편의제공 신청 유의사항

○ '(참고)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증빙서류'를 통해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, 필요 증빙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

※ 상이등급자의 경우,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편의제공 기준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의사 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)

○ 시험시간 연장, 대필 등의 편의제공을 신청한 응시자는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